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1. 청년기본법(제정)	1
2. 김치산업 진흥법(개정)	3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개정)	5
4.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7
5. 한식진흥법(제정)	9
6. 어선안전조업법(제정)	11
7.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14
8. 양식산업발전법(제정)	16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8
1.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18
2.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19
3. 경상북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20
4. 충청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21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22
IV. 국외 입법례(드론 비행금지구역의 보호조치 관련)	58

청년기본법

1

[제정 `20. 2. 4. 시행 `20. 8. 5.]

소관부서 :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과), 044-200-6327

■ 제정이유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통해 청년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제4조 및 제5조).

다.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8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제9조).

마. 정부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함(제11조).

바. 국무총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제12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제13조 및 제14조).

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제15조).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고용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국제협력 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김치산업 진흥법

2 [개정 `2020. 2. 11. 및 시행 2020. 8. 12.]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4, 2135

■ 개정이유

-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과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통일성·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계획에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김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발효식품으로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식생활의 서구화와 1인 가정의 증가 등으로 김치 소비량이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바,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여 김치의 가치와 김치문화 및 김치산업의 중요성을 알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저가의 외국산 김치를 “한국 김치“, “KOREA KIMCHI“ 등으로 표기하여 수출함으로써 수출시장에서 국산 김치가 불공정 경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김치와 그 용기·포장 등에 한국 또는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른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기본 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김치의 날) ①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를 계승·발전하고 국민에게 김치의 영양적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김치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한국김치 등의 표시) 김치와 그 용기·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한국(韓國) 또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들어가는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

-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에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 변화가 능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 및 시·도지사가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격증이 대여·알선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이용자 등의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 휴식년제 등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지정산림문화자산 보호·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사회적·지역적·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 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의 대여·알선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 제재 근거를 마련함(제11조의2제6항·제7항, 제11조의5제3호·제4호 및 제35조제5항제4호·제5호 신설).

다. 자연휴양림 등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자연휴양림 등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6제3호 신설, 제38조제3항제3호).

라.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숲길관리청이 자연휴양림 또는 숲길의 휴식년제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함(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 신설).

마.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제3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개정이유

-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국내 화훼산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 경기침체 등 국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여 있음. 이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실태조사 및 연구·기술개발,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이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마.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재사용 화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함 (제13조 및 제14조).

한식진흥법

5

[제정 `19. 8. 27. 시행 `20. 8. 28]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2

■ 개정이유

- 한식(韓食)은 한류 확산의 대표적 콘텐츠인 동시에 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식산업은 업체당 매출액 등이 일식 및 서양식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경쟁력 약화로 한식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적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는 인구·사회 변화 등에 대응할 한식 전문 인력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경영체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식품분야 정규교육기관 중 한식 전공학과는 소수에 불과하고 한식 음식점업의 조직화 수준도 일식과 서양식에 비해 낮은 상황임. 이에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한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우수 한식당 지정 제도의 도입 등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한식 진흥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함(제5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식의 발굴·복원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식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과 관련된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한식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 개정이유

- 해상에서 어선의 조업과 항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충돌, 침몰 등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서해 5도 해역에서는 남·북한 대치상황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도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에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바, 어선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체계적인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모든 어선에 대하여 적용하되, 일정한 범위의 어업지도선이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제3조).
- 나.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신고를 하도록 하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8조).
- 다. 어선은 기상 악화에 따른 피항, 기관 고장 등으로 인한 표류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포구에는

출입항하지 못하도록 함(제9조).

라.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어선은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을 넘어 조업 또는 항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을 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해역에서의 어업별 조역구역 및 기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사.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선단(선船)을 편성하여 출항하고 조업하도록 함(제15조).

아.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해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접경해역 중 일부 어장에 대한 출입항은 그 지역 관할 군부대장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의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차.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주로 출입항하는 항포구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교신가입하도록 하고, 그 어선이 출항할 때에는 지정된 시간에 맞추어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그 위치를 통지하도록 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위치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어선의 위치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제21조).

아. 어선의 선장은 긴급사태에 관한 경보를 청취하도록 하고, 어선에 승선하는 자는 기상특보 발효 등이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함(제22조 및 제24조).

■ 개정이유

- 양봉산업은 꿀벌을 사육하여 그 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산업으로서, 꿀벌은 꿀과 로열젤리·프로폴리스 등 1차 산물의 생산 외에도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꿀 채집원인 밀원의 감소와 천적생물의 출현,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5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6조).
- 다. 농촌진흥청장은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등의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양봉농가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제13조).

사.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 개정이유

- 유치원 운영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며,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 설립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유치원 설립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유치원이 설립되도록 하고, 현행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는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으로 수입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회계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으로 관리되고 있어 수입·지출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바,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시정·변경 명령 또는 유치원 운영정지·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관할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감시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추진, 양식컨설팅·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1

울산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20.07.01.]



■ 제정이유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정상적인 등원수업을 받지 못하고, 가정양육 영유아가 보육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인 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보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아동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영유아의 보육 서비스를 보장하고 보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에 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안 제5조)
 라.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및 환수(안 제6조 및 제7조)

2

경상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20.07.09.]

■ 제정이유

-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하거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정해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상북도 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정함(안 제3조)
- 나.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서 위임한 허가 대상 소득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규정함(안 제4조)



■ 제정이유

-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나.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학교 운동장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친환경 운동장 조성 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바. 경상남도,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 친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정이유

-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해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 및 교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나. 정의(안 제2조)
-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라. 실태조사(안 제4조)
- 마. 교육과정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안 제5조)
- 바. 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안 제6조)
- 사. 학습지원 등(안 제7조)
- 아. 위탁교육(안 제8조)
- 자.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안 제9조)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등 관련)

[의견20-0146, 인천광역시]

■ 질의요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은 법 제3장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및 이유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를 가리키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은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1995년 1월 5일 제정된 법률로서,(각주: 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일부개정되어 1996. 2. 5.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유 참조)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을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긍정적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고 그와 결부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장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토지 등의 수용·사용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과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장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각주: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주변영향지역”이라는 지역적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는 같은 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공고(제1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의 선정과 선정된 입지의 결정·고시(제9조, 제10조) 등을 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3장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전제로 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와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와 사용, 부대시설 등의 설치 등 주민지원에 대한 폐기물시설 설치기관의 의무(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등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 외에도,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기능(제17조의2),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의 감시(제25조, 제25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해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에 대하여 폐기물시설 설치기관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제26조), 직접 영향권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대한 토지 등의 매수청구권(제17조제4항) 및 같은 매수청구권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특정 용도로 사용할 폐기물시설 설치기관의 의무(제17조제5항)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폐기물시설 설치기관과 주민 등의 권한(또는 권리)과 의무에 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앞서 살펴본 같은 법의 규정들이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9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외에도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절차 및 주민 지원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에게 수혜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폐기물시설축진법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3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는 목적에서 같은 법 제3장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 (1) 또는 (2)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목 (3)에 따라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시설축진법이 적용되는 시설로 조례로 정한 후 같은 법 제2장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절차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위와 같은 전제가 충족된 상태에서 폐기물시설축진법 제3장의 규정내용과 관련된 사항 중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까지인가는 문제되는 개개의 사안에 적용되는 폐기물시설축진법 및 관련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이와 달리 폐기물시설축진법 제2장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축진 등에 관한 내용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1) 또는 (2)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같은 목의 (3)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서도, 같은 법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폐기물시설 설치기관과 주민 등의 권한(또는 권리)과 의무에 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장에 관한 내용만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 및 그와 관련된 주변영향지역 등의 주민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시켜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체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촉진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연계·조화시키려는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권한과 의무, 주변영향 지역 등의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같은 법의 내용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나. 가목의 (1) 또는 (2)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라 한다)

제2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양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입지선정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조사를 생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입지선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제1항의 입지선정계획에 따라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하여만 제4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입지선정위원회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그 결과(제4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 또는 검토의견서를 말한다)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⑦ 입지선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경계로부터 해당 시설 부지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곳을 입지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결과와 그 부지를 입지로 선정하려는 사유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부지면적에 대하여 변경 동의를 할 때 변경 후 부지의 경계로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까지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그 변경 동의를 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7항 후단을 준용한다.

⑩ 제3항 및 제8항 후단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1개월 이상 누구든지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③ 삭제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돌·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관보, 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 및 한 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에 각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법」을 적용하며,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같은 법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

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0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고시한 경우에는 그 고시에 포함된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에 의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이주대책)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부지 및 그 직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9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 유치, 기간시설(基幹施設) 확충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공개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數)와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주민감시요원은 임명 당시 해당 주변영향 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로서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제26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그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의견20-0137, 경상남도 거창군]

■ 질의요지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 등 하위법규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

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재위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가지고, 공공시설의 수용능력 및 위험방지나 유지·관리를 위해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는바, 거창군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이하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이라 함)에 관한 내용은 공공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그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이용권의 적정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고 해당 내용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무의 성질상 지나치게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으로서 불가피하게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아동복지법」 제12조 등 관련) 의견

[의견20-016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질의요지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일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사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조치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각각 둔다고 명시하면서, 그 심의사항으로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제1호),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제2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제3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제4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제5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제6호)이나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정 방법(제2항), 부위원장의 역할(제3항), 위원의 자격·선임방법 및 임기(제4항 및 제5항), 회의의 개의 요건 및 의결 정족수에 대하여 규정(제6항)하고 있을 뿐, 심의사항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같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내 보호대상 아동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법정 자문기관에 해당

하기는 하나, 해당 아동복지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 위임함으로써 지역 상황이나 특성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대상 아동 등에 대한 조치 등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해 거치는 사전적 검토 절차로서 기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아동 보호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 결정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거나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시간상의 제약으로 보호대상 아동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먼저 취한 후 이러한 조치에 대해 사후적으로 심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사후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보호조치 등이 더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전의 보호조치 등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동복지법」 제12조 등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심의위원회의 사후적 심의 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 심의위원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운영 방식의 일환으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아동복지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조치 등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들의 신중한 사전 논의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 등이 도출되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특히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중 보호대상 아동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전 조치·결정에 대해 직권변경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퇴소조치(제3호), 친권행사의 제한·상실 신고 청구(제4호) 또는 후견인의 선임·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제5호)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의 사후적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령상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치법규 입안 시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 대상이나 사유 등을 규정함에 있어 이상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2.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3.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시장이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의견20-0136, 경기도 수원시]

■ 질의요지

-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원시장이 여성폭력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수원시장이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수원 시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각주: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추5162 판결 참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가목),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라목)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제2호에서는 주민복지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가목1)),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라목25))을 각각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련 현황이나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업무수행의 한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수원시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폭력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함)를 실시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조례에 제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라면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각주: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참조)

이와 관련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성접대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에서는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제1항·제2항)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규정(제3항)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 권한을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당시 다른 폭력 방지법에 따른 실태 조사와 마찬가지로 당초 여성가족부장관만 실태조사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제8조)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태조사의 실시주체에 시·도지사를 포함하게 되었는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로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각주: 2018. 2. 21. 의안 번호 2012065호로 발의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검토보고서 p.44 참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장려하는 취지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수원시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원시에서 여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각주: 법제처 2012. 10. 29. 의견제시 12-0338 참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고 수원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파악하여 수원시에서 여성보호를 위한 계획이나 시책을 수립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별도의 법률위임이 없는 해당 조례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비자발적인 출석·진술 요구,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 것은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시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장이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서로 분리되어 각자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되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관련된 고유권한에 대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각주: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 참조)가 적용될 것인 바, 인사·예산 편성·조직 편성권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되는 영역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견제기능으로 보다 폭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에서는 행정조사의 실시 근거 규정을 조례나 규칙을 포함한 “법령등(각주: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법령 및 조례·규칙을 ‘법령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이하 같음.)”으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는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 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조사의 실시 여부나 주기를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의원이 발의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 관련 조례안에 일정 주기를 정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가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정책실현을 위해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견제를 하는 것으로, 조사주기나 횟수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집행기관의 장의 집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

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하 “수원시조례안”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사 주기를 정기적으로 정하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 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조례안의 조사 주기가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의 주기와 일치하므로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원시장이 3년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수원시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원시조례안 제6조제2항에서는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재기재(각주: 수원시조례안 제6조제2항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제3호(2차 피해 유형 등 2차 피해에 관한 사항)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임)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꾸어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 과정에서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에 있어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원시장의 집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은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공표의 근거를 ‘법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수원시장이 실시한 여성폭력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통계 등 가공·분석한 자료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법률에 따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에서 누락된 여성폭력에 관하여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실태조사(이하 “여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의 지역별,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포
2. 여성폭력의 발생 원인 및 배경
3. 여성폭력의 유형, 특성 및 빈도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폭력 현황 및 특성
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폭력 현황 및 변화 추세
6. 그 밖에 여성폭력실태조사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실태조사의 연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폭력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 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국내현황

- 우리나라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을 지정할 수 있다.(「항공안전법」 제127조제1항). 또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외에 150m 이상의 고도, 관제구역 중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인 관제권,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초경량 비행장치인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제 127조제3항제1호, 제2호, 동법 시행규칙제308조제5항,제6항).
- 이러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의 지정과 비행승인 규정은 현행 「항공안전법」의 목적상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지도 포함하고 있지만 무인비행장치 비행안전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2. 국외 입법례

① 미국 : 「연방법전 제6편 제124조 “무인항공기로부터 특정시설 및 자산보호” 」

- 미연방법률은 연방정부가 불법적인 무인항공기의 목표가 될 수 있어 대(對)무인항공기(C-UAS) 기술로 보호받을 요건을 갖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안 및 보호임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확실한 위협의 경감을 위해 해당 무인항공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여준다.
- 이에 따른 해당 조치에는 ①조종자의 사전동의 없이 해당 무인항공기를 감지·식별·관찰·추적 ② 조종자에게 경고 ③ 조종방해 ④ 무인항공기 통제권 장악 ⑤ 무인항공기 압수 ⑥ 무인항공기 무력화, 훼손, 파괴 등이 포함된다.

- 미연방규칙은 소형무인항공기에 대해 특정구역·항공인근·금지 또는 제한구역에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② 영국 : 「항공교통관리 및 무인항공기법안」

- 영국의회는 2020년도 1월에 제출된 「항공교통관리 및 무인항공기법안」을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의 제3부에는 규정대로 사용되지 않은 무인항공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무인항공기 착륙요구권한, 무인항공기 규정 위반행위와 관련된 특정상황에서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정지 및 수색권한, 무인항공기 관련 범죄에 영장발부 진입 및 수색권한 부여, 무선기술 등 대(對)무인항공기 기술 사용권한 등을 부여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③ 일본 : 「중요시설 주변지역의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에 관한 법률」

- 「항공법」은 무인항공기 비행에 의해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공역과 그 외의 공역으로서 사람 또는 주택밀접지역의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한다. 한편, 「중요시설 주변지역의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반과 공공안전을 위해 국가 중요시설, 외국공관, 방위관계시설, 원자력사업소 등과 근처상공에서 소형무인기의 비행을 금지한다. 올해 6월 지정공항과 주변구역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진입한 것으로 위험이 감지되는 때에 경찰관은 조종자에게 기체퇴거 명령, 비행방해, 장비훼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0조). 공항관리자는 비행금지규정을 위반한 소형무인기의 소재파악을 위한 순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소형무인기 발견 시 활주로 폐쇄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시사점

- 미국 연방법령은 공항 및 특정구역, 제한 및 금지구역에서 소형무인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對)무인항공기(C-UAS) 보호장치가 필요한 시설을 지정하고, 해당 시설 내의 사람·시설·자산에 대한 보안·보호임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보호조치 행사권한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비행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진입한 무인항공기로 인하여 확실한 위협이 있는 때에 이를 경감하기 위해 무인항공기에 대한 통제는 물론 필요시에는 손괴(損壞)할 수 있다.
- 영국은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항공교통관리 및 무인항공기법안」에 무인항공기의 위법한 사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은 무인항공기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위협이 감지되는 때에 해당 기체를 착륙시킬 수 있는 권한, 조종 방해기술 사용권한, 적그적인 수색권한 등을 갖게 된다.
- 일본의 항공법은 항공안전을 위한 것인데 반해, 중요시설 주변지역의 상공에서 소형무인기 등의 비행금지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 등 중요시설에 대하여 소형무인기가 가할 수 있는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적 기반시설의 안전과 공공안전의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두 법은 목적을 달리한다. 또한 소형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상 비행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 경찰관과 각 기관별 담당자는 대상시설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종자에 대한 소형 무인기 퇴거명령, 비행방해, 기기 훼손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의 지정을 고시할 수 있다. 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하는 때에 무인비행장치가 야기할 수 있는 위협방지를 위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으로, 위협예방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에 무단으로

진입한 무인비행장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무인비행장치 추적·퇴거명령·비행방해·기기훼손 등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은 법률 개정을 통하여 중요시설 관리자 또는 경찰에게 무단진입한 무인항공기 제어권한을 부여하였고, 일본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상 중요시설을 지정하고, 경찰관 등에게 해당 소형부인기 제어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항공안전법」을 개정하는 방법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